

#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4 - 7호

##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창원시 의회의장

###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정이유

-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수거·관리에 관한 사항 정비 및 올바른 처리 방안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 의약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와 환경 오염 방지 및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현행: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 변경: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3조)

다.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5조)

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

마.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055-225-5374,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keb2024@korea.kr), 직접 방문 등

#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3
----------	-----

발의연월일 : 2024. 1. 10.

발 의 의 원 : 최은하·강창석·김경수·김경희·김미나  
남재욱·박선애·성보빈·이우완·이종화  
이천수·진형익·홍용채 의원(13명)

## 1. 제안이유

-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수거·관리에 관한 사항 정비 및 올바른 처리 방안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 의약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와 환경 오염 방지 및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현행: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 변경: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3조)
- 다.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5조)
- 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
- 마.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
- 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나. 관계 법령
- 다. 현행 조례

##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를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등의”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해야 한다”로 한다.

-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약국이나 보건소 등에 폐의약품 수거용기를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홍보하고, 약국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는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수거·운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중 “의약품 안전사용”을 “시민의 건강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으로,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  
약품 등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한  
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수집·보관된 불용의약품 등을 정  
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신속하  
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  
른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추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  
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  
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

----- 노력해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  
-----  
-----  
----- 해야 ---  
-.

② 시장은 약국이나 보건소 등에  
폐의약품 수거용기를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홍보하  
고 약국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  
는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수거·운반하여 신속하게 처  
리해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  
다.

제6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 시민의 건강과 환

용 및 불용의약품 등 배출에 대하여  
창원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  
-----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  
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기  
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포상  
할 수 있다.

###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제1항 생략)

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

⑥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이하 생략)

### ■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정에서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약국·보건소·보건지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불용의약품 등 수거 및 관리 사업
3.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수집·보관된 불용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 배출에 대하여 창원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과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